

재일 코리안 1세에 있어서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을 소외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함 려 진 (나가사키국제대학 대학원생)

요 지

현재 일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재일 한국인/조선인(이하, 재일코리안)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일 코리안 중 65세 이상이 13%가 넘는다(재일고령자 조사위원회, 2003). 이런 재일한국인/조선인의 고령자(이하, 재일코리안 1세라고 말함)는 대부분 식민지시대에 조국에서의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고 일본에 건너오게 되거나 혹은 강제연행으로 인해 일본에 거주하게 되었다. 재일코리안 1세는 연령적으로는 후기 고령자이며, 문화의 차이, 언어적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많은 어려운 점 중에서도 특히 개호의 문제(노인수발 문제)는 가장 심각하다.

이런 문제들 중 먼저 역사적인 경위에 대해 선행연구 등을 통해 논해 보고자 한다. 또한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문제가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장애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며, 대다수가 무연금자인 점(吉永, 2004), 개호보험과 재일코리안 1세의 경제적인 요인이 심각한 문제인 점(北村, 2004)을 말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후쿠오카/나가사키 지역의 재일동포 1세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재일코리안 1세는 일본의 고령자보다 훨씬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에 소외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재일코리안 1세의 개호의 문제는 한국에서가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일본에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이며 그 개선책 또한 논하였으며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재일 코리안(한국/조선인)의 역사적 경위

지금 재일 코리안의 문제의 시발점은 한일합방을 성립한 1910년 8월22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의 식민지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한일합방의 35년간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많은 재일코리안이라도 불려지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식민지때에 일본으로 이주하게 된 많은 재일코리안은 해방후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었졌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금까지 일본 사회에 남아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해방후 조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귀국선을 탈때 지참금의 제한이 있었다. 강제연행 되어 끌려가게 된 이들은 대부분 농민이었는데 이들은 차별과 편견등의 고난을 겪으며 피땀흘려 모은 돈을 포기하고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조국이 이번엔 남과 북의 서로 다른 나라가 성립되어져 있고 무엇보다 그때 1950년 6월25일 동란이 일어나게 되어 돌아갈 수가 없던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다. 1947년 맥아더 사령부의 통계에 의하면 12월말 재일 한국/코리안의 93.6%에 해당하는 598,507명이었다.(2003.3.1법무성 조사 재일 코리안수613,791명)

1. 재일 코리안들의 일본사회생활 현 실태

태평양 전쟁 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 재일 코리안의 법적인 위치는 호적법으로, 국적준거법의 기능보다 조선인을 배제하고 있는 민족차별의 근거법으로써의 기능은 전쟁 이후 또한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강재상, 1996)

GHQ(General Headquarters)와 일본 정부는 재일코리안에 대하여 강화(講和)조약체결까지는 일본국적으로 일본 국민과 같은 일본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며, 관리의 목적으로는 외국인등록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국민고유의 권리인 참정권은 인정하지 않은 이율배반적인 법리, 또한 이중 국적보유적 윤리에 의해 편한 상황에 필요에 응할때만 재일 코리안 처우를 하고 있다.(강재상, 1996)

이런 법적 위치를 둘러싸고 있는 윤리모순은 외국인등록령의 주체적인 적용과정에 있어서 한층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외국인등록증명서의 국적란에 ‘조선’ 또는 ‘한국’이 기재되어져 있으면, 이것은 국민연금 가입권리 또한 제한을 받게 되어 생활의 큰 장애요인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김태기, 2002)

현재 일본 전국의 외국인등록자수는 1,915,030명이며, 그 중 재일코리안은 613,791명(2003.3.31 일본 법무성 조사), 일본 전체 외국인의 32.1%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 중 특별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55만명 남짓하다. 이 숫자를 도도부현(都道府縣)별로 본다면 오사카부(大阪府)가 약153.000명, 효고현(兵庫縣)이 약 64.000명, 교

또부(京都府)가 42,000명으로 이 3부현 을 합계하면 26만명 넘는 숫자이다. 즉 일본의 관서(關西)지방의 3부현에서 제일 한국/조선국적의 영주권자가 전국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사카의 이쿠노구(生野區) 구민의 4분의 1이 한국/조선인이라도 말할수 있다. 학교 각 학년의 교실의 학생중에 일본 학생 보다 제일코리안 학생수가 더 많은 교실도 이 지역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仲尾, 2001)

그리고, 제일 코리안의 사회보장 제도면에서 본다면 제일 코리안은 해방 전 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 따라 특별영주권 등 일본의 관리 상황에 따라 주어졌다. 이 국적의 문제가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점, 장애인 보장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제일 코리안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동일하게 구제조치가 되어져 있지 않은 점은 일본사회에서 제일동포가 배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신영홍,?)

일본인의 구제조치의 참고적인 예로는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된 일본인의 경우 무연금인인이 되지않도록(제일 조선인 인권 세미나, 1999) 또한 미국에서 오키나와 상환시, 북한에서 일본인 납치가족들 귀국시에는 경과조치를 합산하여 모든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일본의 개호보험에 있어서 제일동포 1세의 서비스 이용 연구조사 분석

1) 조사 목적

제일코리안 1세에 속하는 고령자들이 현행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경험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사회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2) 조사 대상

일본 큐슈지방의 나가사키현(長崎縣), 후쿠오카현(福岡縣)에 거주하고 있는 제일 코리안1세의 고령자 287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이다.

3) 조사기간

2005년 4월1일 ~ 5월12일

4) 조사방법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

5) 유효회수율

나가사키현 127통 중 53통(무효 2통), 후쿠오카현 160통 중 33통(무효 3통)
총 287통 중 회수 86통, 무효 5통(유효 회수율 29.97%)이었다.

6) 조사결과

I. 개호보험 높은 미신청률

먼저 전체 81명에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건강하지 않다’고 답한 이들 52명이었다. 이 52명들에게 ‘개호보험의 신청 유무’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17명(32.7%)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II. 서비스 이용에서 낮은 이용률

개호보험의 신청 유무의 질문에서 ‘신청했다’ 29명, 그리고 ‘모르겠다’ 6명이라고 답한 이들에게 서비스의 이용 유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용하고 있지 않다’ 15명(42.9%)이었다.

III. 소외원인

① 가족과의 깊은 관계에서의 생활

- 거주 상태 ⇒ ‘자식과 같이 동거’하고 있는 이들이 전체 81명 중 36명(44.4%)로 제일 많은 비율이었다.
- 경제적 수입원 ⇒ ‘자식으로부터 도움 받는다’ 전체 81명 중 25명(30.9%)로 제일 높은 비율이었다.
- 의논 상담 ⇒ 어려울 때 의논 상대자를 질문한 결과 ‘딸, 아들(배우자 포함)’ 전체 81명 중 59명(72.8%)로 다른 의논상대자들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었다.

② 유교적 관념이 강하다

‘개호는 가족(배우자/자식 포함)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질문에 전체 55명 중 14명(25.5%)이었다.

③ 부유하지 않은 생활

전체 81명에게 생활의 상태를 질문했을 때 ‘부유하지 않다’ 29명(35.8%), ‘전혀 부유하지 않다’ 18명(22.2%)에 전체 58%가 그다지 삶의 여유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④ 언어적 문제

「2002년 오사카의 실태조사에 의해 각인 된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불리한 문맹 상태」에서 ‘일본어를 읽지 못한다’가 전체 40%이었으며, ‘일본어, 한글(한

국어)를 읽지 못한다' 전체의 30% 넘는 조사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이었다. 전체81명 중 '일본어가 이해 안 됨' 31명(37.1%), '한국어가 이해 안 됨' 45명(53.2%)이었다. 이 결과는 나가사키/후쿠오카는 오카사 만큼 제일 코리안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다. 즉, 일상 생활이 일본의 사회에 속에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어의 이해도가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재일 동포 1세의 개호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는 달리 표면적으로는 제도 발족 단계부터 재일코리안 고령자들 또한 포함된 제도방식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국민연금제도로부터 제외되었던 사실,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고령기에는 노동력의 퇴하로 인해 경제적 불안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본인 부담감을 가지게 하는 개호보험 서비스에서는 재일 코리안 고령자들에게 그 의의가 표면화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개호보험제도에 있어서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는 실태를 생각할 수 있다(北村, 2004). 또한 개호보험의 요(要) 개호 인증 및 개호서비스 이용의 상관성은 재일동포의 언어적인 문제 즉 문맹의 문제와 개호보험에 관한 정보에 관한 것 보다 국민연금의 유무, 생활보험수급의 유무 같은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에서의 이용료과 보험료의 경제적 부담감이라는 경제적 요인과 강하게 상호작용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일본인 고령자 또한 같은 문제점을 같은 이유로 인해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처럼, 재일동포 1세에게는 사회보장제도의 대응이 법적 문제로 인해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의 조사에서 밝혀진 결과처럼 재일 코리안1세들의 고유한 생활형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제도에 개호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된 점이라도 말하고 싶다.

이 개호보험 내면적인 면에서 볼 때는 개호보험서비스의 가이드 북, 전단지를 배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복지관계자들과 함께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needs를 찾아 개발해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中山, 2005)

또한, 일본인 홈헬퍼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인 재일 코리안인들의 홈헬퍼 교육 등을 병행하여 재일 코리안 1세의 욕구에 맞는 개호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은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의 단체에서 함께 지도, 계획하도록 각 지방본부에 또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일 코리안들 비롯해 다수의 민족과 협동(協働) 하는 방향으로의 해결책들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더욱 더 풍요로운 삶

의 원천으로 연결 될 것이다. 또한 이것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과 일본인이 그리고 한국과 한국인이 세계 속에서 모든 이들이 조화되고 평화롭게 더욱 더 편히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향후 과제

재일 코리안들에게는 오래 전부터 한반도민족의 전통적 가족관이 이어져 온 부모공경에 대한 강한 이념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일본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긍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사회적인 편견, 불평등이 많은 가운데 본인 스스로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이번 연구를 실시하는 동안 너무나도 낮은 회수율과 재일동포 대다수의 소극적인 자세 등을 느낄 수 있었다. 재일 코리안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 또한 일본인과 동일한 권리가 주어져야 함을 또한 번 생각할 수 있고, 이는 일본 사회의 다민족협동사회의 형성을 위한 목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아쉬운 점 중 하나라도 볼 수 있다.

또한 재일코리안 1세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 지역의 일본 고령자도 포함시켜 조사한다면 재일코리안 1세의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률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 번 연구에서 밝혀진 재일 코리안 1세의 고유성을 토대로, 다민족 개호보험의 방법, 본 국 한국의 고령자의 비교연구가 앞으로 더욱 필요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1) 石井昭男1999年 『在日朝鮮人と日本社會』 明石書店
- 2) 姜在彦·金東勳1996年 『在日韓國·朝鮮人一歴史と轉望』 勞働經濟社
- 3) 金泰明2004年 『マイノリティの權利と普遍的人權概念の研究』 トランスビュー
- 4) 金正根·園田恭一·辛基秀1995年 『在日韓國·朝鮮人の健康·生活·意識』 明石書店
- 5) 在日コリアン研究會2004年 『となりのコリアン』 日本評論者
- 6) 庄谷怜子·中山徹1997年 『高齡在日韓國·朝鮮人』 御茶の水書房
- 7) 愼英弘? 『定住外國人障害者がみた日本社會』 明石書店
- 8) 田中宏2003年 『在日外國人』 岩波新書
- 9) 仲尾宏2001年 『在日韓國·朝鮮人問題の基礎知識』 明石書店
- 10) 民團50年史編集委員會 1997年 『民團五十年史』 在日本大韓民國民團
- 11) 李節子2001年 『在日外國人の人口動態』 21世紀委員會くらしづくり部會

- 12) 2005年10月3日 『讀賣新聞』
- 13) 2004年 『在日コリアン高齢者生活實態調査報告書』 在日高齢者調査委員會
- 14) 강덕상, 정진상 외 2000년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출판부
- 15) 垣田裕介2004年 『「社會的排除」概念からみた在日コリアン高齢者の生活と福祉』
- 16) 韓日條約について <http://www.tabiken.com/history/doc/N/N365L100.HTM>
- 17) 北村香織2004年 『介護保険制度利用状況からみえる 「在日」 コリアン高齢者の生活實態と政策問題』
- 18) 嵯峨嘉子2004年 『在日外國人と生活保護制度をめぐる緒問題』
- 19) 庄谷怜子1995年 『大阪における韓國・朝鮮人の階層構成と生活保護』
- 20) 中原洪二郎 2003年 『參政權と歸化をめぐる在日韓國人の意向、その類型化と構造の分析』 二階堂裕子2004年 『多民族共同社會の構築と社會保障に関する一考察』
- 21) 吉中李子2004年 『「在日」 コリアン高齢者の經濟状況からみるくらしの實態—無年金問題を主として—』
- 22) 1 May 1946,subj:Treatment of Koreans and Formosans,KK/G3 00044